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584306 판결 [보증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2020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합584306 판결

전문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복남

피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종원

2.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90,598,122원과 이에 대한 2017. 12. 13.부터 2019. 4.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337,955,732원과 이에 대한 2017. 12. 13.부터 2019. 4.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675,771,101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675,771,101원 중 465,899,95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대형통상구분기의 제작 및 설치 등

(1) 피고 B은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대형통상구분기1)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2012. 9. 5. 1차 물품계약, 2013. 1. 24. 2차 물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1, 2차 물품계약의 계약금액은

합계 1,967,999,000원이다. 피고 B은 2013년 12월경 위 대형통상구분기를 C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2016. 5. 31.까지 위 대형통상구분기를 시운전하였으며, 2016. 6. 1. C우편집중국 소속 직원에게 위 대형통상구분기(이하 '이 사건 1호기'라고 한다)를 인수인계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1호기 외에 추가로 대형통상구분기(이하 '이 사건 2호기'라고 한다, 이 사건 1호기와 이 사건 2호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설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이 사건 2호기에 관하여 2014. 12. 1. 1차 물품계약, 2015. 9. 17. 2차 물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1, 2차 물품계약의 계약금액은 합계 24억 5,000만 원이다. 피고 B은 2016. 12. 27. 이 사건 2호기를 C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물품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비의 시운전 기간에는 성능이행 보증금을, 이 사건 각 설비의 시운전 후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1)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호기에 관하여 피고 B의 하자보수 보증금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이 2016. 5. 12.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98,399,950원, 보험기간이 2013. 12. 7.부터 2018. 5. 31.까지로 되었고, 피고 A은 2016. 5. 12. 이행(하자)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행하였다.

(2) 피고 A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2호기에 관하여 피고 B의 성능이행 보증금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이 2017. 5. 18.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3억 6,750만 원, 보험기간이 2016. 12. 26.부터 2017. 8. 31.까지로 되었고, 피고 A은 2017. 5. 18.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수리 요구 등

(1) 원고는 피고 B에, 이 사건 1호기에 대하여 소음 발생, 이물질 유입, 볼트 풀림 현상, 오일 누유, 부품의 편마모 현상, 프로그램 오류, 우편물 낙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1.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2호기에 대하여 2017. 5. 11. 프로그램 보완, 모터, 벨트 등 부품 교체, 우편물이 기계 사이에 끼는 현상 제거, 안전장치 설치, 기계가 켜지는 시간 단축, 준공도면 제출 등 성능 보완을 요청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4.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이 사건 각 설비를 수리하였다.

(2) 피고 B이 이 사건 각 설비를 수리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에 하자과 성능 보완 사항이 계속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B에 다시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 보수와 성능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2017. 6. 29. 더 이상 원고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7. 3. 피고 B의 하자 보수 및 성능 보완 미이행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B은 불출석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에, 2017. 7. 26. 이 사건 1호기에 대하여, 2017. 8. 11. 이 사건 2호기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A은 피고 B이 손해의 발생을 부정하며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2, 5,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고 성능 보완이 필요함에도 피고 B이 원고의 하자 보수 및 성능 보완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성능 보완 사항도 하자로 볼 수 있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설비 수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설비를 수리하여 이 사건 각 설비에는 하자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이는 C우편집중국 직원의 작동 미숙 등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 유무

갑 제14,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1호기를 수리한 이후에도 2017. 8. 8.경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는 고장 수리비로 26,571,00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2호기는 피고 B의 직원이 C우편집중국에서 철수한 이후 2017. 7. 3.경부터 가동이 중단된 사실,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합계 103,925,000원 상당의 부품을 구입한 사실, 감정인 D은 이 사건 1호기에 대하여 별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2호기에 대하여 별표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설비에는 별표1, 2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2호기에 관하여 별표2 순번 4, 8, 10, 11, 12, 16번 기재 하자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원고 주장의 위 각 하자는 그 하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그 감정결과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7, 8, 9, 17, 18,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를 뒤집고 이 사건 2호기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1호기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별표3 기재와 같이 148,690,865원이 필요하고, 한편 원고가 그동안 직접 이 사건 1호기를 보수함으로써 인건비 2,351,474원이 발생한 사실, 또한 이 사건 2호기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별표4, 5 기재와 같이 230,293,882원(192,382,984원 + 37,910,898원)이 필요하고, 한편 이 사건 2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인건비 9,261,90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호기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151,042,340원(148,690,865원 + 2,351,474원)이고, 이 사건 2호기의 하자로 입은 원고의 손해는 239,555,782원(230,293,882원 + 9,261,9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2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이 사건 2호기 구입대금 24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융비용 266,329,316원(이 사건 2호기 구입대금에 자기자본 투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또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금융비용은 이 사건 2호기에 관한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손해를 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사건 2호기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와 함께 구할 수 있는 손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390,598,122원(151,042,340원 + 239,555,78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호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98,399,950원으로 한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2호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억 6,750만 원으로 한 성능이행 보증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1호기의 하자로 인하여 151,042,340원 상당의 손해를, 이 사건 2호기의 하자로 인하여 239,555,782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입었음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호기와 관련하여서는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인 98,399,950원을, 이 사건 2호기와 관련하여서는 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손해액인 239,555,782원을 각각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A의 보험금채무는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고, 그중 어느 한 채무가 변제되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액 중 337,955,732원(98,399,950원 + 239,555,782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²⁾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7. 12. 13.부터 피고 A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판사 강상호 판사 이상언

별표1

⑩ 1호기 하자여부 및 피해의 보수 의무 정리 (○ : 해당됨, X: 해당사항 아님)

번호	하자 항목	하자 여부	피해의 보수 의무
1	트랙 구동 시 소음이 심함	○	○
2	트랙 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의 배출 구간이 전혀 없음	○	○
3	무거운 우편물이 실린 캐리어가 옆으로 기우는 현상 발생	○	○
4	LIM과 Reaction Plate 간 슥림 현상 발생	○	○
5	캐리어 텐션롤러 관련 문제 다수 발생 ① 고정볼트 풀림 및 부러짐 다량 발생 ② 고정볼트에 원나사와 오른나사를 구칙 없이 혼용하여 해체 및 체결 불가 ③ 텐션조정을 부트볼트 풀림 다량 발생 ④ 축 슥림(고정볼트 위치 슥림)에 의해 텐션조정 불가능한 경우 다량 발생	○	○
6	캐리어 간 연결볼트 풀림 현상	○	○
7	신속운 개폐 시 슥림 현상에 의한 부하 발생 및 슬라이드 축 고정 불량	○	○
8	6번 공급부 검사 컨베이어(B01) 모터 오일 누유	○	○
9	컬렉터 브러시의 편마모가 심함 ① stem 및 스프링의 탄성이 너무 세다 ② 전원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③ 아크 발생에 의한 브러시와 Power rail의 파손이 발생 ④ 부품교체주기가 너무 짧아짐	○	○
10	캐리어 인덕션 및 슈팅 포인트가 매일 달라짐	○	○
11	OCR에서 판독프로그램이 중복 실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
12	KaOS에서 IPS 및 OCR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불가능	○	○
13	KaOS 알림내역 표출 안 됨	○	○
14	B존 인덕션 타건기 2대 불량	○	○
15	슈트와 인덕션(A존, B존)사이에 슈트가 없는 곳임에도 우편물 떨어짐이 발생	○	○

별표2

㉔ 2호기 성능보완의 여부 및 피고의 책임 여부 (○ : 해당됨, x: 해당사항 없음)

구분		성능보완 항목	성능보완 여부	피고의 책임
1	구 분 기	슈트 만재시 현장에서 만재확인 곤란	○	○
2		슈트 만재센서 감지시 램프 점멸	○	○
3		구분기 트럭 기동시간 단축 조정	○	○
4		Select S/W 기능 구현 및 평판 부착	확인불가	
5	컨 베 이 어	컨베이어 과부하 문제	○	○
6		인버터 에러 발생	○	○
7		A존과 B존의 수동제어로 물량조정	○	○
		A존 →B존으로의 물량 과다 이송 문제	○	○
		인덕션-벨트 사이에 끼임	확인불가	
		신속문 개폐시 끼임	○	○
		벨트와 벨트 사이에 끼임	확인불가	
8		마감	○	○
9	P L C	A존 →B존으로의 물량 과다 이송 문제	○	○
10		A존 및 B존 인덕션으로의 원활한 공급	확인불가	
11		A6→A7 C/V 우편물 과다 이송 문제	확인불가	
12		티퍼작동 재조정	확인불가	
13		신속문 제어 재조정	○	○
14		A3-2 수작업 공급 C/V의 PLC 미연결	○	○
15	KaOS	조희화면의 장비선택시 "전체장비" 선택 목록단추 없음	○	○
16	기 타	인덕션 타건기에서의 통신장애 해결	확인불가	
17		파렛트 잠금장치 문제 해결	○	○
18		작업자 작업시 안전	○	○
		도면 및 PLC 프로그램 소스 제출사항 등 (저작권)	x	x
19		PLC 프로그램 설계 (사용권)	○	○

별표3

번호	하자 항목	금액(원)
1	트랙 구동 시 소음이 심함	55,642,611
	트랙 내부로 유입된 이물질의 배출 구간이 전혀 없음	
2	무거운 우편물이 실린 캐리어가 옆으로 기우는 현상 발생	51,950,023
	LIM과 Reaction Plate 간 쓸림 현상 발생	
	캐리어 텐션롤러 관련 문제 다수 발생	
	캐리어 간 연결볼트 풀림 현상	
3	부하 발생 및 슬라이드 축 고정 불량	680,567
4	6번 공급부 검사 컨베이어(B01) 모터 오일 누유	229,171
5	컬렉터 브러시의 편마모가 심함	24,155,739
6	캐리어 인덱싱 및 슈팅 포인트가 매일 달라짐	15,987,266
	OCR에서 판독프로그램이 중복 실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KaOS에서 IPS 및 OCR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불가능	
	KaOS 알림내역 표출 안 됨	
	B존 인덱싱 타건기 2대 불량	
7	우편물 떨어짐이 발생	45,488
합 계		148,690,865

별표4

구분		성능보완 항목	금액(원)
1	슈트램프	슈트 만재시 현장에서 만재확인 곤란	4,260,867
		슈트 만재센서 감지시 램프 점멸	
2	구분기	구분기 트랙 이동시간 단축 조정	7,993,633
		Select S/W 열판 부착	110,713
3	컨베이어	컨베이어 과부하 문제	22,653,684
		인버터 에러 발생	
		A존과 B존의 수동제어로 물량조정	
		우편물 파손문제	
4	PLC	A존 →B존으로의 물량 과다 이송 문제	17,664,678
		신속문 제어 재조정	
		A3-2 수작업 공급 C/V의 PLC 미연결	
5	KaOS	조회화면의 장비선택시 "전체장비" 선택 목록단추 없음	4,942,245
6	기타	파렛트 잠금장치 문제 해결	6,835,827
7	기타	작업자 작업시 안전	222,436
8	신규 PLC 프로그램 설계 및 설치		127,698,900
합 계			192,382,984

별표5

번호	내용	금액(원)
1	8-1번 항목 C/V간 단차를 두어 우편물 꺾 제거 개선	6,729,026
2	10-1번 항목 A7 및 A14 C/V의 검사각을 30도에서 45도로 개선	28,320,481
3	19번 항목 spare part 부품	산출불가
4	19번 항목 준공도면 제출	2,861,392
합계		37,910,898

- 1)우편물의 우편번호 등 정보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행선지별로 자동 분류하는 설비이다.
- 2)보증보험계약 보통약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A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피고 A에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보험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